

영등포구의회
제14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1. 6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구민회관 공연장이 최신 시설을 갖춘 전문공연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공연장의 명칭(안 제2조)
 - 대공연장의 명칭을 “영등포아트홀”로 한다.
- 시설의 관리 및 운영(안 제4조)
 - 구청장이 직접 관리·운영(필요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)
-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 -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수탁자의 선정기준, 의무, 위탁의 취소, 지도·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6조부터 제10조)

- 사용시간 및 사용료(안 제14조)
 - 시설의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,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함
- 사용료의 감면(안 제15조)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,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는 구민회관 내 설치된 대공연장의 명칭을 “영등포 아트홀” 로 정하고
 -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민회관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, 필요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고
 -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기준, 수탁자의 의무, 위탁의 취소,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

- 안 제12조 제1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, 제2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, 반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13조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, 그 사용료는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고
- 안 제14조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고
- 안 제15조는 관람료 징수와 할인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6조는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
- 안 제18조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●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등포구 구민회관이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사용료가 타구에 비하여 적정하게 책정 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1. 6.

보고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자치법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제144조 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■ 지방재정법

제31조 (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